공고 제2024 - 600호

[■] 통행의 금지·제한 변경 공고 [] 차량의 운행 제한

「도로법」 제76조제1항ㆍ제2항. 제77조제1항ㆍ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.

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☐ [■] 통행의 금지·제한 을 을 다 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☐] 차량의 운행 제한 ☐ [] 차량의 운행 제한 ☐ [] 사랑의 유행 제한 [] 사랑의 유행 제한 [] 사랑의 유행 제한 ☐

변경 공고합니다.

2024년 04월 24일

영 동 군 수

도로의 종류	군계획도로	노선명	매천리(중로1-3)
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	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항에 따른 모든 차량 및 건설기계	구간	영동읍 매천리 산20-1 ~ 영동읍 매천리 산3-18
기간	당초 : 2024년 04월 01일부터 ~ 2024년 05월 31일까지 변경 : 2024년 04월 01일부터 ~ 2024년 05월 01일까지		

이유

용두공원 사면보강 경관정비공사 중 사면보강(락볼트 시공)에 따른 크레인(200Ton) 작업공간 확보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 및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 도모를 위하여 통행을 금지·제한하고 자 함

그 밖의 사항

우회도로 현황(통행 금지·제한 구간을 이용해야 할 도로 이용자는 우회도로 사용) "붙임 위치도 및 우회도로 안내도" 참조

첨부서류: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